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9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3. 제안 이유

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에는 노사정위원회를, 지역에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 우리도에 두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○ 성격 : 지역내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기구

- 구성 :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노동단체 대표, 사용자단체 대표, 자치단체 대표, 노동관서 대표, 노동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- 주요기능 (협의사항)
 - 지역내 노사정 협력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
 -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 -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

-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하며 출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지역내 노사정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,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,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

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근거 법령과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조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한 바,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